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 육 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 활동에 대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 회계처리 기준을 ‘국가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변화된 교육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근거 법령문 정비(안 제1조)

1) 상위 법령 「지방회계법」 관련 조항으로 근거 정비

나.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1)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통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정비

다. “회계실체”, “공정가액”, “내부거래” 용어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라.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법령문 정비(안 제6조)

1)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서로 구분하도록 정비

마.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정비(안 제7조)

1) 상위 법령 「지방회계법」 관련 조항으로 출납폐쇄기한 근거 정비

2)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부거래는 상계하도록 재무제표 작성원칙 추가

바.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재무제표 과목의 법령문 표시 형식을 열거형으로 정비(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사. 수익의 정의에서 회계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등 시·도교육청 내(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사이 등)에서의 순자산 변동 사항에 대해 수익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22조)

아. 수익의 분류 정비(안 제23조)

- 1) 이전수익, 자체수익 및 기타수익의 구분을 과목을 열거하는 형식에서 각각의 수익의 내용을 정의하는 형식으로 법령문 정비

자. 비용의 정의에서 회계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등 시·도교육청 내(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사이 등)에서의 순자산 변동 사항에 대해 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24조)

차. 비용의 분류 정비(안 제25조)

- 1) 비용의 과목을 열거하는 형식에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책·단위사업 분류를 따르도록 법령문 정비

카. 원가계산에 관한 법령문 정비(안 제26조)

- 1)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법령문 정비

타. 순자산변동표의 항목 정비(안 제31조)

- 1) 순자산변동표의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 항목에 운영차액 추가
- 파.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시·도교육청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등에 관한 공시 사항을 변화된 교육여건에 맞게 삭제(안

제33조)

하. 부속명세서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35조)

- 1)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표현하던 것을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로 표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회계과목에 대해 부속명세서를 제공하도록 부속명세서에 대한 정의 명확화

거. 자산의 평가기준 정비(안 제37조)

- 1) 기부채납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회계 간 재산이관, 물품 소관 전환 등에 따른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으로 변경하도록 자산 평가기준 정비

너.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금 지급대상자 범령문 정비(안 제46조)

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기준 정비(안 제47조)

- 1) 현재가치 평가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법령에서 직접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재무보고서에 적용하는 시기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 - 부칙에 규정)

러. 리스회계처리 평가기준 정비(안 제49조)

- 1) 리스회계처리 평가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법령에서 직접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

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정비(안 제50조)

- 1)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법령에서 직접 처리방식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

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등 우발상황에 대한 현행화 및 회계처리 기준 정비(안 제51조)

- 1) 우발상황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현행화하고 법령에서 직접 처리방식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

서. 재무제표 서식 중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서식을 변화된 교육여건에 맞게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지방회계법」 제9조·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거래”를 “일반적인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도교육청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되어야 하는 개별 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상태·재정운영결과·현금흐름”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현금흐름”으로 한다.

제6조 중 “(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를 “(註釋)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무제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제12조 중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미수채권·미수금·단기대여금·선급금”을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으로 한다.

제13조 중 “장기금융상품·장기투자증권”을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

권”으로 한다.

제15조 중 “산업재산권·저작권·소프트웨어”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16조 중 “제15조까지 의”를 “제15조까지의”로, “장기미수금·보증금·장기선급금”을 “장기미수금, 보증금, 장기선급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를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에”를 “이내에”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을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차입금·지방채”를 “장기차입금, 지방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차입금·지방채”를 “장기차입금, 지방채”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수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2. 자체수익: 시·도교육청의 고유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급여·지급수수료·임차료”를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조금·기부금”을 “보조금, 기부금”으로 한다.

제25조 중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단위사업 분류와 감가상각비용”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원가계산에 관한 준칙에”를 “바에”로 한다.

제27조 중 “경상활동·투자활동”을 “경상활동, 투자활동”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투자자산·유형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경상활동·투자활동”을 “경상활동, 투자활동”으로 한다.

제30조 중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으로, “증가”를 “운영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에 한함), 증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주식·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주식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말한다”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주식 등의 작성지침)”을 “(주식 및 부속서류 작성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식·필수보충정보”를 “주식, 필수보충정보”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식한다”를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을 주식으로 공시한다”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제46조 중 “자가”를 “퇴직금 지급대상자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채권·채무”를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제수익률을 적용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제48조제3항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5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말한다”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

다”로 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5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를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로 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제50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1조의 제목 “(우발상황)”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발상황”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확정될”을 “궁극적으로 확정될”로,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를 “이익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이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④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제6조의 재무제표의 구성 중 현금흐름표와 제47조의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의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재 정 상 태 표

해당연도 년 월 일 현재
직전연도 년 월 일 현재

시·도교육청명

(단위 : 원)

과 목	해당연도(년)				직전연도(년)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B)	내부거래 (C)	계 (A+B-C)	교육비 특별회계 (D)	기금 (E)	내부거래 (F)	계 (D+E-F)
자산								
I.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								
II.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								
III. 유형자산								
1. 토지								
...								
IV.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								
...								
V. 기타비유동자산								
1. 장기미수금								
...								
자산총계								
부채								
I. 유동부채								
1. 예수금								
...								
II. 장기차입부채								
1. 장기차입금								
...								
III. 기타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								
부채총계								
순자산								
I. 고정순자산								
II. 특정순자산								
III. 일반순자산								
순자산총계								
부채와 순자산 총계								

※ 종합결산 작성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내부거래로 구분하여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재 정 운 영 표

해당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전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도교육청명

(단위 : 원)

과 목	해당연도(년)				직전연도(년)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B)	내부거래 (C)	계 (A+B-C)	교육비 특별회계 (D)	기금 (E)	내부거래 (F)	계 (D+E-F)
수익								
I. 이전수익								
1. 중앙정부이전수익								
...								
II. 자체수익								
1. 등록금수익								
...								
III. 기타수익								
1. 이자수익								
...								
수익총계								
비용								
I. 인적자원운용								
1. 교직원역량강화								
...								
II. 교수학습활동지원								
1. 교육과정운영								
...								
III. 교육복지								
1. 학비지원								
...								
IV. 보건급식								
1. 보건관리								
...								
V. 학교재정지원관리								
1. 학교운영비지원								
...								
VI. 학교시설여건개선								
1. 학생배치시설								
...								
VII. 평생교육								
1. 평생교육운영								
...								
VIII. 교육행정일반								
1. 정책기획및비상계획								
...								
VIII. 기관운영								
1. 기본운영비								
...								
IX. 재무활동								

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X. 예비비및기타								
1. 예비비및기타								
...								
XI. 인건비								
1. 공무원인건비								
...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 감가상각비								
...								
비용총계								
운영차액								

※ 비용에 표시되는 과목은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정책사업·단위사업 레벨순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비용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순 자 산 변 동 표

해당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직전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도교육청명

(단위 : 원)

과 목	해당연도(년)				직전연도(년)			
	교육비특별 회계(A)	기금 (B)	내부거래 (C)	계 (A+B-C)	교육비특별 회계(A)	기금 (E)	내부거래 (F)	계 (D+E-F)
고정순자산								
I. 전기이월고정순자산								
II. 고정순자산의 증가								
1. 토지의 증가								
...								
III. 고정순자산의 감소								
1. 토지의 감소								
...								
IV. 차기이월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I. 수정후전기이월특정순자산								
1. 전기이월특정순자산								
2. 회계변경누적효과								
II. 운영차액								
III. 특정순자산의 증가								
1. 목적사업적립금의 증가								
...								
IV. 특정순자산의 감소								
1. 목적사업적립금의 감소								
...								
V. 차기이월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I.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1. 전기이월일반순자산								
...								
II. 운영차액								
III. 일반순자산의 증가								
1. 고정순자산의 감소								
2. 특정순자산의 감소								
IV. 일반순자산의 감소								
1. 고정순자산의 증가								
2. 특정순자산의 증가								
V. 차기이월일반순자산								
기말순자산								

※ 기말순자산 = 차기이월고정순자산 + 차기이월특정순자산 + 차기이월일반순자산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10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9조·제12조----- ----- ----- ----- -----.
제2조(기준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 ① ----- ----- ----- ----- ----- ----- 일반적인 거래----- ----- -----.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도교육청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

	<u>성할 때 상계되어야 하는 개별 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u>
제3조(재무보고) ① (생략)	제3조(재무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보고는 시·도교육청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1. <u>재정상태·재정운영결과·현금흐름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u>	1. <u>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현금흐름</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식(註釋), <u>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u> 다.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 ----- ----- ----- ----- <u>(註釋)</u> 으로 구성되며, <u>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u>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생략)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 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②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 -----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신 설>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미수채권·미수금·단기대여금·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저작권·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

-----.

③ 재무제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제12조(유동자산) -----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
--.

제13조(투자자산) -----

--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
-----.

제15조(무형자산) -----

-----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
-----.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

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보증금·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생략)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

----- 제15조까지의 -----

----- 장기미수금, 보증금, 장기선급금 -----.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

② ----- 이내에 -----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

③ ----- 장기차입금, 지방채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

② -----

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23조(수익의 분류) ①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이전수익·자체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② 이전수익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으로 교부금수익 및 전입금수익 등을 말한다.

③ 자체수익은 시·도교육청의

장기차입금, 지방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수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2. 자체수익: 시·도교육청의 고유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

고유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수익, 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등을 말한다.

④기타수익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이자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외화환산이익 및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지급수수료·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

----.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

1. -----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 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제26조(원가계산) ①·② (생략)

-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제27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상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2. ----- 보조금, 기부금 -----

--.

제25조(비용의 분류)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단위사업 분류와 감가상각비용 ----.

제26조(원가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바에 -----
-----.

제27조(현금흐름표) -----

-- 경상활동, 투자활동 -----
-----.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생략)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생략)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생략)

제30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증가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투자자산, 유형자산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
경상활동, 투자활동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순자산변동표) -----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

-----.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
----- 운영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③ (생략)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제7장 주식·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33조(주식) ① (생략)

② 시·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시·도교육청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4. ~ 9. (생략)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한다.

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에 한함), 증가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장 주식 및 부속서류

제33조(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9. (현행과 같음)

제35조(부속명세서) -----

-----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

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제36조(주식 등의 작성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
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
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의 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제36조(주석 및 부속서류 작성지
참) -----

--- 주석, 필수보충정보 -----

 -----.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

----- . 다만, 다음 각 호
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
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삭 제>

③ _____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
 능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
 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
 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
 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
 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
 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채권·채무의 현재
 가치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이하

 ----- 인식하고, 해
당 손상차손을 주석으로 공시한
다.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퇴직금 지급대
상자가 -----

 -----.

제47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

 ----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
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삭 제>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
용한다.

<신 설>

<신 설>

제4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
금성자산, 미수채권, 차입금 등
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
계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및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자산 및 부채
를 말한다.

제49조(리스회계처리) ① (생략)

③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
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
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
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로 할인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
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은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
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제4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
계 없-----

-----.

제49조(리스회계처리) ① (현행과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신 설>

같음)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

<신 설>

<신 설>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는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

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

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1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
-----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된 과거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1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및 우발자산----- 궁극적으로 확정될 -----

----- 이익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②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

<신 설>

문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이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④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식에 공시한다.